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단 등은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게 함(안 제16조 및 제26조).
- 제대군인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함(안 제20조 및 제20조의3).
- 임무의 성격,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대군인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II. 검토의견

-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수정을 포함하여 국가보훈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함(주서본 참조).

첫째, 약칭 사용의 오류 수정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 제16조제4항은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군 또는 공익분야에서의 의무복무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은 적용의무 대상기관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단 등 공공부문에 한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관련 조항을 인용하면서 “취업지원실시기관”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동 용어는 현행법 제15조에서 사립학교 및 사기업 등 민간부문 기관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미 약칭¹⁾되어 있어, 법 적용범위 및 해석상 모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약칭 “취업지원실시기관” 이 아닌, 다른 규정에서 널리 사용중인 일반적 용어인 “취업지원 실시기관”²⁾으로 수정하여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공공부문에 한정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특수직종 우선고용)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실시기관(이하 “취업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이 안전관리직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에 직원을 채용하거나 고용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추천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인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우선하여 채용하거나 고용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공·사단체).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3. 사립학교

2) 아래 입법례와 같이 다른 법률에서 약칭이 아닌 일반 용어로 “취업지원 실시기관”을 사용중에 있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1. ~ 3.(생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 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고용비율을 9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그 밖에 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 또는 단체

＜ 현행법 및 개정안의 용어 비교 ＞

구분	현행법 제15조	개정안(제16조)
관련 조문	제15조(특수직종 우선고용)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실시기관(이하 “ 취업지원실시기관 ”이라 한다)이----- ----- -.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 또는 제33조의2제2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실시기관 은----- -----.
적용 범위	“취업지원실시기관” 약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각 호의 모든 기관을 의미(사기업체, 사립학교 등 민간부문도 포함) 【약칭의 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기관】 •(제30조 각 호의 기관)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公·私企業體) 또는 공·사단체(公·私團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3. 사립학교	개정안은 “취업지원실시기관” 약칭을 인용하지만, 실제 대상은 아래에 해당하는 공공부문 기관만을 의미하므로 수정 필요 【개정안의 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기관】 •(제30조제1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 •(제33조의2제2항제1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제33조의2제1항제2호)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또한, 개정안 제16조제4항은 근무경력에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려는 것인데, 적용대상이나 범위 기준이 되는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의무복무기간”이 다소 모호하여, 현행법상 의무복무의 근거법률인 「병역법」, 「군인사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을 명시하여 보다 명확하게 수식할 필요가 있음.³⁾

3) 보다 자세한 의무복무기간 및 근거법률은 참고자료 참조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④ 제3항 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0조제1호 또는 제33조의2제2항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 지원실시기관 은 해당 기관에 채 용 또는 고용된 제대군인의 호 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의무복무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 무경력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④ ----- ----- ----- ----- ----- 취업 지원 실시기관 은----- ----- ----- ----- 「병 역법」, 「군인사법」, 「대체 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군 ----- ----- ----- -----.

둘째, 용어의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 제20조제2항 전단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후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기관을 “의료기관”으로 다르게 명칭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의미가 다소 모호할 수 있음.

따라서, “의료기관”을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으로 수정하여 용어간 통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건
제20조(의료 지원)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에게 <u>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하여 진료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 감면에 드는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u>의료기관</u> 에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의료 지원) ② ----- ----- ----- ----- ----- ----- ----- ----- <u>보훈병원</u> <u>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u> ---- -----.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참고자료

제대군인 복무기간 현황

□ 의무복무 제대군인

구분	법정의무 복무기간	근거법령	실 복무기간	복무기간 (조정)근거	감독기관	
현역	병	2년(육군) 2년(해병) 2년 2개월(해군) 2년 3개월(공군)	병역법 제18조제2항	1년 6개월(육군) 1년 6개월(해병) 1년 8개월(해군) 1년 9개월(공군)	병역법 제19조	국방부
	단기복무 장교	3년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4호	ROTC 2년 4개월 학사장교 등 3년	군인사법제7조 제1항제4호	
	단기복무 부사관	4년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7호	군인사법제6조제7항제3호의 단기복무 부사관(임기제) 4년의 범위	군인사법제7조 제1항제7호가목 (병역법제20조의 2제1항)	
				군인사법 제6조제7항 제5호의 단기복무 부사관 병역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병의 복무기간	군인사법제7조 제1항제7호다목	
군인사법제6조제7항제6호의 단기복무 부사관 3년				군인사법제7조 제1항제7호라목		
전환복무	의무경찰	'21년 부터 모집 중단('23년 완전폐지)				경찰청
	" (해양)					해양경찰청
	의무소방원					소방청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2년 2개월	병역법 제30조	1년 9개월	병역법 제42조	국가,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법무관	3년	병역법 제34조의6	3년	-	법무부
	공중보건과의사	3년	병역법 제34조	3년	-	복지부
	공중방역수의사	3년	병역법 제34조의7	3년	-	농림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3년	병역법 제34조	3년	-	병무청
	산업기능요원	2년 10개월(현역대상) 2년 2개월(보충역대상)	병역법 제39조	2년 10개월(현역대상) 1년 11개월(보충역대상)	병역법 제42조	병무청
	전문연구요원	3년	병역법 제39조	3년	-	병무청
기타	예술·체육요원	2년 10개월	병역법 제33조의8	2년 10개월	-	문화체육관광부
	상근예비역 *현역복무 간주	2년 6개월 이내	병역법 제23조	18개월	병역법 시행령 제37조	병무청
대체역	승선근무예비역 *현역복무 간주	3년	병역법 제23조의2	3년	-	해수부
	대체복무요원 (‘20년부터 모집)	3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3년	-	법무부 (교정본부)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관련근거 : 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

구분	장교	준사관	부사관
단기	3년	5년	4년
장기	10년		7년

* 자료: 국가보훈부